

2000. 2. 26(토)
제5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

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산 업 도 시 위 원 회

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. 16 제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2. 21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2.23(제57회임시회산업도시위원회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윤 종 섭)

가. 제안사유

- 제천시가 특허 출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“박다리와 금붕어” 문화관광 캐릭터상표의 사용에 관한 범위 및 계약등 캐릭터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
-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상표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사용료 수입증대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천시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일정기준, 사용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하므로써 상표권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재정 확충에 기여
 -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계약체결, 일정사용료 징수
 -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및 비도덕적 사용과 제천시 위상에 손상이 될 경우 사용권 제한
 - 전용 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한 동일상표의 제3자 사용을 금지하여 전용 사용권 보호
 - 제천시가 등록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
 - 캐릭터사용 전담부서(문화관광과)를 지정하여 관리사용의 효율성 제고

- 등록된 상표를 소재로 상품을 제작하여 직접·위탁판매로 시
재정 확충
- 캐릭터의 인지도 제고와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의
이미지 제고등 침체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일로
부터 1년간 사용료면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법적 검토

-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
자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
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
- 행정절차법 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(20일이상)을 준수
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
조례 제정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됨.

나. 행정적 검토

- 본 조례 제10조(상표권 사용심사)를 보면 상표권을 효율적
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,
위원회 기능은 제천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
하고 있으나
-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려면 제천시정 조정위원회
조례 제3조(결정사항)의 내용에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
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“제천시정조정위원회
조례” 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, 추후 관련 부서
(기획담당관실)와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
바람직할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 의 요 지

- 1) 캐릭터의 주가가 높아져야 효율성이 기대되는데 향후계획은? (김병창 의원)
- 2) 본 조례 10조에 “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,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”하였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사항이 없는데에 대한 대책은? (김병창 의원)
- 3) 무단 사용자에게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이유는? (이종호 의원)

나. 답변요지 (문화관광과장 윤종섭)

- 1)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되어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겠음.
- 2)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본조례를 제정한 후 할 단계로써, 조례제정후 하겠음.
- 3) 본 조례의 상위법인 상표법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본조례에 없음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1 부. 끝.